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0
----------	-----

제출년월일 : 2000. 6. 29.

제출자 : 파주시장

□ 개정이유

- 산업단지 계약체결은 매도자(시장)와 분양을 받은자 간에 동등한 지위에서의 계약사항이나 분양계약조건 위반시 매도자(시장)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규제정비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권고함에 따라
- 동 내용을 폐지하고 분양계약서상에 명시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방산업단지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계약해지시 이미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기타 납입금에 대하여 기간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계약해지시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독으로 산업시설 용지로 공급할 것이 곤란한 경우와 분양 받을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 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하고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임.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업지원과 ☎ 940-4541
입 안 자	기업지원과장	홍 덕 기
	창업지원담당	유 영 남
	담 당 자	안 근 태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계약해지)①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자가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애로 기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엔 한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독으로 산업시설용지로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삭 제)